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윤미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11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2. 28.

발 의 자 : 윤미향 · 강성희 · 민형배
송옥주 · 양정숙 · 윤재갑
이성만 · 강은미 · 김용민
용혜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규정에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결함을 그 원인으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각지에 걸쳐 산사태로 인한 인명·재산피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,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올해 발생한 산사태 중 임도에서 발생한 건은 316건으로 전체의 35.5%를 차지하고 있음. 따라서 임도, 벌채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산의 원형을 변형하는 산림사업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

하는 사업의 시행,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를 포함시키고
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(안
제2조제6호의2 및 제9조제3항 신설 등).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결함”을 “결함 또는 산림사업의 시행, 관리상의 결함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“산림사업”이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본문 중 “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”을 “공중이용시설, 공중교통수단 또는 산림사업”으로, “제2항”을 “제2항 또는 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제1호·제4호 및 제2항제1호·제4호”를 “제1항제1호·제4호, 제2항제1호·제4호 및 제3항제1호·제4호”로 한다.

③ 산림청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산림사업의 시행,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

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3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“중대시민재해”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, 제조, 설치, 관리상의 <u>결함</u> 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. 다만,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.	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결함 또는 산림사업의 시행, 관리상의 결함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.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6의2. “산림사업”이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.</u>

7. ~ 9. (생 략)

제9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
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 ① .

② (생 략)

<신 설>

7. ~ 9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
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 ① 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산림청장, 지방자치단체의
장,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
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
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
하는 산림사업의 시행, 관리상
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
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, 신
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
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
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
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
조치

2.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
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
조치

3.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
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
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
에 관한 조치

4.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
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

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<u>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</u>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, 용역,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<u>제2항의 조치</u>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, 장비,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·운영·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 ④ <u>제1항제1호·제4호 및 제2항제1호·제4호</u>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<u>의 조치</u> ④ ----- ----- -----<u>공중이용시설, 공중교통수단 또는 산림사업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제2항 또는 제3항</u>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⑤ <u>제1항제1호·제4호, 제2항제1호·제4호 및 제3항제1호·제4호</u>----- ----- -----.
--	---